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24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이수진・남인순・이기헌

김동아 · 최기상 · 민병덕

이건태 • 백승아 • 장철민

김현정 · 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은 관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65 조).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14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제65조제1항 전단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10명"을 "11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심사평가원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 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	제20조(임원) ①			
서 이사장 1명, 이사 <u>14명</u> 및	<u>15명</u>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				
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				
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4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			
	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			
	의를 받은 사람 <u>1명</u>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5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	제65조(임원) ①			
원으로서 원장, 이사 <u>15명</u> 및	<u>16명</u>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				
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				

임으로 한다.

- ②・③ (생 략)
-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⑤ ~ ⑦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u>11명</u>
1. ~ 3. (현행과 같음)
4. 3년 이상 재직한 심사평가원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
의를 받은 사람 1명

⑤ ~ ⑦ (현행과 같음)